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52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이광희・박수현・강준현

김 윤 • 박해철 • 신정훈

김영호 • 박희승 • 위성락

임미애 • 박지원 • 김민석

이병진 • 박홍근 • 장종태

김영배 · 김종민 · 차지호

이기헌 · 허성무 · 김영환

박정현 • 민형배 • 이상식

안규백 • 박선원 • 모경종

홍기원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업무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 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후원회 회계 보고일 이내에"로,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수령내역을 발급(전산수록)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후원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			
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		
<u>30일까지</u> 정치자금영수증을 <u>후</u>	<u>에</u> <u>피</u>		
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u> 부하여야</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			
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			
께 보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		
	급 시스템에서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수령내역을 발급(전산		
	<u>수록)한 경우</u>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